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방안〉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62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9.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34조).

바.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안 제39조).

사.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Ⅲ. 검토의견

1.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

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 이라고 함)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기업등에게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또한, 산업부장관의 판정신청 통지를 받고도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u>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신설> <신설>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한 자 5.~7. (생략)

현행법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러나, 대상기관이 동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판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²⁾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기술보호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보호에 취약한 상황임.

1)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2019년 동 국가핵심기술 판정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핵심기술인 조선분야 기술도면이 프랑스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음.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전략기술 판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³⁾, 이와 유사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첨단전략기술과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등에게 판정신청을 통지할 수 있다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불법수출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기술을 숨기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산업부장관의 인지로 판정신청을 통지하여 신청을 유도하고, 판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여 국가핵심기술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④ (생략)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⑧ (생략)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의 등록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관련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

개정안과 같이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한다면, 기술보호조치 및 실태조사 회피 등을 방지할 수 있어 기술유출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록의무 대상인 기업등은 등록 내용 및 방법 등을 대상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

4) 산업통상자원부는 등록 대상으로 ① 대상기관의 상호, 주소지, 대표자명, ②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명, 기술명, 기술보유형태, 기술보유 사업장 ③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보 등을 계획하고 있음.

2.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명령 등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또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개선권고) ①·② (생략)	제13조(개선권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시정명령을 ----- 시정명령의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제3항

현행	개정안
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 -----.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39조(과태료) ① ----- -----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 6. (생략)
<신설>	7.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현행법은 산업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있음.⁵⁾

그러나 이러한 개선권고는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후속조치를 할수 없으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방해행위로 보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⁶⁾, 현재까지 개선권고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어 동

5) 제13조(개선권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이하 생략)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개선권고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 불이행하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선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조치가 미흡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국가핵심기술 등의 보호 강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하게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나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⁸⁾ 이를 이행하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제12조)에 대한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8)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일각에서는 시정명령으로 인한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저해, 과도한 보호조치의 강제시행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권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기업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② (생략) <u><신설></u>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은 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관리 현황,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또는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9) 「산업기술보호법」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서면을 통해 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기술유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음.

다만, 외국자본이 국내에 국가핵심기술과 무관한 업종 또는 분야의 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후 본국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술유출 방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으나, 현행은 ‘대상기관’¹⁰⁾이 아닌 기업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기술유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국가핵심기술 등 침해신고가 있을 시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을 신속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면,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여러 기술유출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4. 비밀유지의무자 확대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판정(안 제9조의2) 및 보유기관 등록(안 제9조의3)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상기관의 개선권고(현행 제13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비밀유지의무자로 추가 명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
<u><신설></u>	<u>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
3.·3의2. (생략)	3.·3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안 제9조의2) 및 보유기관 등록(안 제9조의3)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업등의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 전략기술 보유 여부 등 중요정보 등을 인지할 수 있고,

현행 제13조에 따라 대상기관의 개선권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사항이나¹¹⁾ 산업기술 R&D의 개발성과물 보호 대책¹²⁾ 등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임.¹³⁾

이에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판정, 개선권고 등 업무상 중요한 산업기술 정보에 접근가능한 자들을 비밀유지의무자로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산업기술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3) 제13조(개선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11조제9항)¹⁴⁾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제11조의2제11항)¹⁵⁾의 승인·신고를 심사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의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6호 신설).

또한, 산업부장관의 정당한 승인·신고수리 없이 진행된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제11조의2제7항 및 제9항¹⁶⁾)에 따라

-
- 14)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⑧(생략)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5)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 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⑩ (생략)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6)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매 1일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제39조(과태료) ① ----- -----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5. (생략) 6. <u>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1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u> 7.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이행강제금)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u>

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부장관은 이러한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비밀 등 중요정보 유출가능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꺼리는 대상

기관이 있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상기관등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제11조의2제7항), 산업부장관의 정당한 승인·신고수리 없이 해외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제11조의2제9항)에는 산업부 장관은 이를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로 보아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¹⁷⁾

그러나, 벌금 등 사후에 이뤄지는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기술유출의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간 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

17)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6조(벌칙)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을 제고하고 진행중인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매 1일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뿐 이행강제금의 한도 및 횟수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1